

『평화학연구』의 논문 투고 규정

2014년 11월 30일 개정

1.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제1저자는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가입 이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활동이력이 있어야 하며 가입과 동시에 투고는 불허한다.
2. 정회원은 본 학술지에 연 2회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단, 단독 1회와 공동저자로 1회까지 가능하며 연속게재는 불허한다.
3. 투고 논문은 본 학회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평화'와 관련된 학술적 성격을 가진 논문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사실이 없는 독창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4. 국문 논문은 한글프로그램(한글 2007이상 파일)을 사용하여 A4용지에 단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 분량은 A4용지 20매 또는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서평의 경우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200자 원고지 5매(1,000자)당 2만원의 인쇄비를 징수한다(한글프로그램에서: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원고지로 체크). 국문 논문의 전체 분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A4용지 25매 또는 200자 원고지 180매(서평의 경우 200자 원고지 40매)를 초과할 수 없다. 영문 및 기타 외국어 논문은 Microsoft Word를 사용하여 A4용지 20매(6,000단어)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8,000단어를 넘지 않도록 한다. 분량 초과 원고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5. 심사의 판정에서 '게재 가'로 통과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본 학회의 편집규정 및 윤리규정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되지 않을 수도 있다.
6. 『평화학연구』에는 제1저자를 기준으로 동일기관 소속의 논문이 해당호에 2편을 초과하여 게재될 수 없다. 이에 심사의 판정에서 '게재 가'로 통과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동일기관 소속이 2편을 초과할 경우 전체 평점이 높은 순위로 해당호에 우선 게재여부를 확정하며 나머지 논문의 경우는 차기호에 게재하도록 한다.
7. 투고 논문의 제출은 본 학회의 공식 전자우편(peacestudies@naver.com) 및 등기우편을 사용한다. 투고 논문의 구성은 제목, 저자(소속),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Abstract, 본문, 참고문헌의 순으로 배열한다. 제출 논문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영문), 필자이름(국.영문), 필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국.영문), 전화번호, 연락주소, Fax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감사의 말과 논문투고 설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국문초록의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매 이내, Abstract의 경우에는 영문제목과 영문저자명(소속)을 포함하여 200단어를 넘지 못한다. 주제어는 국.영문을 망라하여 10개 내외로 한다.

8. 논문의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한다. 다만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I …, 1…, 1)…, (1)…, ①…”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1) 인용문은 “ ”로 하고 강조할 사항이나 특수한 용어는 < >로 표시할 수 있다.

2) 투고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자를 쓰고, 외국 인명 및 지명은 한글(원어 표기)로 쓴다.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어의 경우에는 첫 번째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안에 외래어를 부기한다<예시: 세계화(Globalization)>. 인명의 경우에는 첫 번째 한하여 한글명(한자명),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한글 표기의 외국인명(원어명) 또는 외국지명(원어명)을 부기한다<예시: 김구(金九), 후진타오(胡錦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조지 부시(George Walker Bush),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뉴욕(New York), 베이징(北京), 도쿄(東京)>.

9.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10. 심사시 투고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고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지칭할 때에는 ‘졸고’ 혹은 ‘졸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며 그 대신 반드시 투고자의 지칭이름을 밝혀 적는다. 또한 본문과 각주 및 참고문헌 등에서도 투고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언급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논문 투고자는 원고접수와 함께 학회은행계좌(하나은행, 계좌번호 20002-90404, 사단법인 N사료 한국평화연구학회)로 소정의 연회비(50,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N

12. 논문 투고시 소정의 심사료

* 예시 1: 단행본의 경우

- 1) 신성태, 『평화와 대화』(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8), p.91.
- 2) 이서행.양동안.윤황.조영기.박흥기.최문형, 『통일시대 남북공동체』(서울: 백산서당, 2008), p.12.
- 3) 김철경 외, 『남북정상회담』(서울: 매봉, 2001), pp.10-13.
- 4)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68), p.20.
- 5) Martin Crevelde, Van Crevald, and Martin Kim, *The Transformation of War* (New York: Free Press, 1990), pp.11-14.
- 6) James Lee, etc., *World Ord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7), p.89.

* 예시 2: 논문의 경우

- 1) 김수민, “북한 급변사태 개연성: 내부요인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제9권 3호 (2008), pp.19-21.
- 2) 최경구.유문무, “북한의 주체이념과 사상교육,” 김문조(편), 『북한사회론』(서울: 나남, 1994), p.35.
- 3) 김성민, “미국의 동북아안보정책과 군사혁신,” 김이성(편), 『동북아의 평화론과 평화구상』(서울: 동북, 2004), pp.122-123.
- 4) Hun Kyung Lee, “Corresponding Steps and Further Approaches for North Korean Nuclear Solution through Application of Game Theory, Bargaining Theory, and Prospect Theory,”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vol.9, no.4 (2008), p.69.
- 5) Carlos Marighella, “From the Mini-Manual,” Walter Laqueur (eds.), *Terrorism Reader: A Historical Anthology*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78), p.34.
- 6) Michael L. Moodie, “The Chemical Weapons Threat,” Sidney D. Drell, Abraham D. Sofaer, and George D. Wilson (eds.), *The New Terror: Facing the Threat of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99), pp.11-12.

* 예시 3: 발표문의 경우

- 1) 박흥순, “이명박 신정부의 대외정책: 특징과 과제,” 『새정부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구상과 전망』, 세계평화통일학회 2008년 동계 국내학술대회(2008.2.14), p.25.
- 2) 양병기, “남북한 관계의 현황과 전망: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3회 세계평화통일학회 국제학술대회(2008.10.24-27), p.305.
- 3) Sung Jo Park,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roaches toward Unification Policy: Reflections and Perspectives,”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organized by the Knowledge Center,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and Korea Institution of Public Affair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cember 5, 2005, p.55.

* 예시 4: 연구총서·연구보고서의 경우

- 1) 허문영·오일환·정지웅,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KNU 연구총서 07-10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125.
- 2) Noland, Marcus, *Famine and Reform in North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 C., Working Paper 03-5, July 2003, p.33.

* 예시 5: 신문의 경우

- 1) 이수민, “동북아 협력안보레짐,” 『중앙일보』, 2007.4.12.
- 2) Axel Berkofsky, “EU’s North Korea Policy a Non-starter,” *Los Angeles Times*, July 14, 2003.

* 예시 6: 웹사이트의 경우

- 1) 김일태,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아서,” <http://www.ilminkor.org> (검색일: 2007.4.5).
- 2) Axel Berkofsky, “EU’s North Korea Policy a Non-starter,” *Los Angeles Times*, July 14, 2003.

* 예시 7: 재인용의 경우

- 1) 김수민(2008), p.66.
- 2) ‘위의 글’, ‘앞의 책’, ‘전게서’, ‘상게서’ 등의 표기 금지

2. 표와 그림(또는 사진)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 <표 1>, <그림 1>)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표와 그림의 하단 부분에 ‘출처:’라고 표시하고 그 자료를 밝힌다<예시= 출처: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1995.11), p.172>. 단, 표와 그림의 주가 있을 경우에는 하단에 개별 주, 일반 주, 출처의 순서가 되도록 배열한다.

▣ 참고문헌의 작성 ▣

1.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북한문헌, 외국문헌(동, 서양의 순) 등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姓)을 기준으로 한글과 한자의 경우에는 가나다순, 그리고 외국어의 경우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참고문헌은 단행본의 경우에는 저자, 저서명, 출판사 지역명, 출판사 명, 출판 연도의 순서로, 논문의 경우에는 필자, 논문제목, 편.저자, 저서명, 출판사 지역명, 출판사 명, 출판 연도의 순서로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 예시 1: 단행본의 경우

- 1) 신성태, 『평화와 대화』,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8.
- 2) 이서행·양동안·윤황·조영기·박흥기·최문형, 『통일시대 남북공동체』, 서울: 백산서당, 2008.
- 3) 김철경 외, 『남북정상회담』, 서울: 매봉, 2001.
- 4) Huntington, Samuel P.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68.

- 5) Crevelde, Martin, Van Crevald, and Martin Kim. *The Transformation of War*. New York: Free Press, 1990.
- 6) Lee, James, etc. *Wold Orde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7.

* 예시 2: 논문의 경우

- 1) 김수민, “북한 급변사태 개연성: 내부요인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제9권 3호 (2008).
- 2) 최경구.유문무, “북한의 주체이념과 사상교육,” 김문조(편), 『북한사회론』 서울: 나남, 1994.
- 3) 조철호,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군사안보적 제도화,” 강성학(편), 『동북아의 평화사상과 평화체제』 서울: 리북, 2004.
- 4) Lee, Hun Kyung, “Corresponding Steps and Further Approaches for North Korean Nuclear Solution through Application of Game Theory, Bargaining Theory, and Prospect Theory,”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vol.9, no.4 (2008).
- 5) Marighella, Carlos, “From the Mini-Manual.” Walter Laqueur (eds.), *Terrorism Reader: A Historical Anthology*,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78.
- 6) Moodie, Michael L., “The Chemical Weapons Threat.” Sidney D. Drell, Abraham D. Sofaer, and George D. Wilson (eds.), *The New Terror: Facing the Threat of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99.

* 예시 3: 발표문의 경우

- 1) 박흥순, “이명박 신정부의 대외정책: 특징과 과제,” 『새정부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구상과 전망』 세계평화통일학회 2008년 동계 국내학술대회, 2008.2.14.
- 2) 양병기, “남북한 관계의 현황과 전망: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3회 세계평화통일학회 국제학술대회, 2008.10.24-27.
- 3) Park, Sung Jo.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roaches toward Unification Policy: Reflections and Perspectives.”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organized by the Knowledge Center,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and Korea Institution of Public Affair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cember 5, (2005).

* 예시 4: 연구총서.연구보고서의 경우

- 1) 허문영.오일환.정지웅,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KNU 연구총서 07-10,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2) Marcus, Noland. *Famine and Reform in North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Working Paper 03-5, July 2003.

* 예시 5: 신문의 경우

- 1) 이수민, “동북아 협력안보레짐,” 『중앙일보』, 2007.4.12.
- 2) Berkofsky, Axel. “EU’s North Korea Policy a Non-starter.” *Los Angeles Times*, July 14, (2003).

* 예시 6: 웹사이트의 경우

1) 김일태,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아서,” <http://www.ilminkor.org> (검색일: 2007.4.5).

2) Kim, Michael, “North Korea.” <http://www.infoplease.com> (searched date: March 1, 2006).

<부칙> (2004.01.02)

제1조 본 규정은 200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기존의 관례에 따른다.

<부칙> (2006.04.02)

제1조 본 규정은 200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02)

제1조 본 규정은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02)

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2)

제1조 본 규정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02)

제1조 본 규정은 201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02)

제1조 본 규정은 201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02)

제1조 본 규정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02)

제1조 본 규정은 2013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